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

가. 제안이유

- 화성시 합계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저하 관련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 지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출산 지원금 지원기준을 첫째아·둘째아까지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을 증액 조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첫째아 및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급액을 증액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제명 변경 및 용어 재정비 등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 검토결과, 조례개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을 전입신고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하고, 부정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예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공경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규 전시공간인 동탄아트스퀘어의 사용료 상한기준을 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전시실 사용료 개정(별표1)
 - 전시실(동탄아트스퀘어) 사용료 신설: 1회(1일) 35,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소재한 신규 전시공간인 동탄아트스퀘어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에 대한 일일사용료를 책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전시공간 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송선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입각하여 기존 3대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증액함으로써 화성시민들의 효행을 보다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가.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효도수당 지급액을 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적에 맞도록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요 골자로는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를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거주자’로 개정하여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액하며, 지급중지 대상자들에 대한 환수규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세대갈등 완화 및 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부양가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지급 기준일 및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정 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노인복지과장 지현)

가. 제안이유

-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문화예술체육인의 특화묘역 안치를 장려하고자 안장 신청 및 자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장 신청 자격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안장할 수 있는 특화묘역을 운영함에 있어, 안장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송선영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내년부터 운용할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민간 위탁 사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당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화성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려는데 주된 취지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강행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해당 버스사업을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 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화성시 장애인가족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 지원)
-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화성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위 치: 향남읍 도이1길 104, 협회동 301호·304호
- 시설규모: 114.52㎡(사무실 44.36㎡, 상담실 70.16㎡)
- 위탁기간: 2021. 7. 1. ~ 2023. 6. 30.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회(대표: 김희현)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상담사 1명)
- 주요사업: 장애인가족상담, 역량강화사업, 휴식지원사업 등
- 2022년 지원예산: 235,000천원(도비20,000천원, 시비215,000천원)

다. 위탁개요

- 위탁사무: 화성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3. 7. 1. ~ 2025. 6. 30.(2년)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맞춤지원: 장애인 가족·부모 등 상담,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장애인가족역량강화: 생애주기별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 진행
 -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장애인가족 문화 활동·여행 지원
 - 지역사회협력: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 자원 개발 및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23년 지원예산안: 243,000천원
(도비 22,000천원, 시비 221,000천원)
 - 인건비 160,000천원(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금 등)
 - 사업비 65,000천원(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사업비)
 - 운영비 18,000천원(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 유지비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2023. 3.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3. 5. 수탁기관 협약체결
- 2023. 7. 민간위탁 운영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붙임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23. 6. 30.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위수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과장 박노영)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비 100% 출연으로 2016. 11. 22. 설립되었으며 여성 및 가족 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음.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으로, 화성시에서 재단에 위탁예정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행정재산 위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관련을 위해 동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위치 : **비공개**
- 용 도 :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
- 전용면적 : △△△m²

사업명	소재지	사용층수·전용면적		사용자	사용기간
화성시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사용료 감면	비공개	A층	AAA m ²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2. 12. ~ 2024. 12. (25개월)
		B층	BBB m ²		
		C층	CCC m ²		

- 감면비율 : 100% 감면(무상 사용)
- 감면기간 : 2022. 12. ~ 2024. 12. (25개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2. 12. 2022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12.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 2022. 12. 사용료 감면 통보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 임시보호시설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을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 재단에 위탁하여 25개월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25개월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 긴급한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행정재산이 사용수익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